

5인 미만 제조업체 10,000개소, 재해예방 집중지원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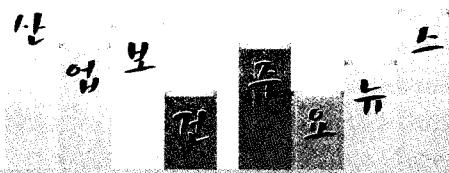
– 노동부, 재해예방 기술지원 및 안전검사 사전컨설팅 나서기로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고위험 업종의 5인 미만 제조업체 중 위험 기계·기구 보유업체를 중심으로 한 10,000개소가 재해예방을 위한 노동부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올해 6월말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를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재해자수가 유일하게 증가함에 따라, 올 8월부터 집중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통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위험요인을 개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근로자들을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이번 “5인 미만 제조업체 재해예방 기술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기술지원 대행 요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김·끼임, 떨어짐, 넘어짐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지도하고, 산업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며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 기계·기구에 대하여 예비검사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 사업주의 검사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작업환경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여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잊은 휴·폐업 등으로 소재 파악 및 관리가 어려워, 그간 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하였다.



산업안전보건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위한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및 해체·제거업자 등록제 시행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건축주는 반드시 노동부 지정을 받은 석면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석면 해체·제거는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해야 한다.

그동안 석면 해체·제거 작업은 작업장별로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허가를 얻은 후 작업을 해 왔으나, 석면 함유 건축물의 불법 철거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량이 급증하여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으며 무허가 불법작업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석면관련기관의 자격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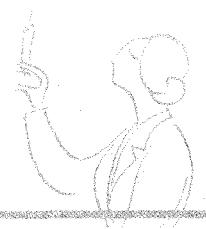
8월7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석면제도 중 석면 해체 및 제거와 관련된 사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할 경우, 작업 전 노동부의 지정을 받은 석면 전문조사 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는 석면조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건축주에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석면조사 없이 철거·해체한 경우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1% 초과)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신고하고, 작업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석면해체·제거 작업 후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석면농도기준, $0.01\text{개}/\text{cm}^3$)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석면 해체·제거 작업 후에는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일정 수준 이하($0.01\text{개}/\text{cm}^3$)로 유지하도록 하여 다음 단계인 철거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마스크, 보호의 등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건축물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도 석면에 의한 위험성이 없도록 할 것이다.

노동부는 전문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조사능력 및 석면해체업자의 수준을 평가하여, 전문성과 신뢰도가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화학물질 급성중독사고, 물질별 공정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예방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별로 주요 취급공정에 맞는 맞춤형 전문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직업병을 유발하는 10대 급성중독 물질별로 주요 3대 공정을 선정하고 취급량 및 종사 근로자 수가 많은 2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급성중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50인 미만 영세업체는 산업위생분야 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위험요소의 파악 및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법을 물질별 주요 공정 중심으로 집중 지도받게 된다.

지금까지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에 대해 일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기술지원을 해 왔다면 이번 조치는 10대 급성중독성 물질에 특화하고, 특히 노출위험이 큰 주요 위험공정에 집중함으로써 급성중독사고를 예방하는데 훨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톨루엔을 포함한 10대 화학물질은 급성중독물질로서 그 간 직업별 발생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주요 3대 공정은 급성중독물질별로 직업병이 이미 발생한 사례가 있거나 노출위험이 큰 공정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해당 사업장에는 산업위생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해당 공정에서의 급성중독물질 노출 경로를 파악, 노출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실천하기 쉬운 안전작업방법 등 실질적인 조치사항을 지도하며, 동시에 공정설비와 환기장치의 설치 및 관리상태를 평가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 적합한 개선대책을 제공한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사업장별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지원

노동부는 사업장에 신종인플루엔자(H1N1) 대유행을 대비한 업무지속계획(BCP)을 수립토록 안내하고 관련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신종인플루엔자(H1N1) 대유행시 대규모 결근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장에서는 업무를 지속시키기 위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대비 사업장 업무지속계획(BCP)수립 매뉴얼”은 대유행시의 사업장 대응 체계(조직) 마련, 대규모 결근 발생에 대비한 필수유지업무 지정 및 인력운용 계획수립, 사업장내 감염관리, 환자 발생시 대처요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시 대응을 총괄하는 책임부서 및 업무별 실무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등의 대비계획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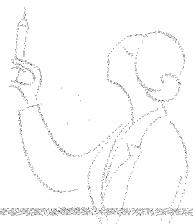
대규모 결근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핵심업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인력 및 자원의 운용계획을 수립

사업장내 감염관리를 위하여 근로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수칙을 안내·교육하고, 출장, 대면회의 등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대인접촉으로 인한 감염기회를 줄임

사업장내 환자발생시 보고·검진·신고(보건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대유행 경보 발령 시에는 매일 직원들의 체온 측정 및 증상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감염 확산을 방지

노동부는 사업장에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토록 안내하고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대비 사업장 업무지속계획(BCP)수립 매뉴얼」을 사업장에 보급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산업 보건기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도할 방침이다.

50인-99인 사업장(2만2천개소)은 동 매뉴얼을 유인, 배부, 100인 이상 사업장(1만7천개소)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동 매뉴얼을 다운받아 활용토록 안내공문 발송, 50인미만 사업장(2만5천개소)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보건관리대행기관을 통한 안내 및 지도



또한,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산업보건기관이 사업장 지도 점검 시 업무지속계획(BCP) 수립을 지도토록 하고 경총 등 사업주단체 등에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안내, 교육토록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그 밖에도 외국인근로자 입국시 건강검진 시 감염여부 확인 및 예방수칙을 모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배부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주에게 인도 시 사업주에게 예방교육 안내문 및 업무지속계획 매뉴얼을 배부하고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및 민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훈련생 교육 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안내·교육하고, “심각”단계 발령 시 훈련생에 대한 일일발열감시를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